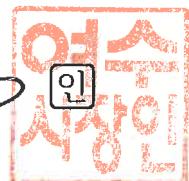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골목형상
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8 월 11 일

여 수 시 장 2023.08.11



여수시 조례 제1936호

붙임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부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관내 일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 절차법」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 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

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수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제2조 관련)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면적: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직인

■ [별지 제2호 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제4조 관련)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상점가명			
	주요 소재지			
	상점가 규모	토지 면적: m ² , 건물 연면적: m ² , 영업장 면적: m ² , 점포 수: 개		
	업종별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총 동, 총 동, 총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m ²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각 호에 동의를 하는 자의(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서명 · 날인한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210mm×297mm[백상지 80g/m²]